

2.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 조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 범위를 규정하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2000. 2. 9)되고 구체적허용범위를 정한 동법시행규칙이 개정(2000. 5. 4)됨에 따라
- 동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종전엔 보호구역내에서만 제한하던 것을 500미터이내 지역까지 확대토록 규정
(안 별표 제1호)
- 도로법에 의한 이격거리를 종전 30m이내지역에서 고속도로, 철도로부터 200m, 국토, 지방도, 군도(시도)등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m이상지역으로 규정(안 별표 제2호)
- 국가 및 지방 1, 2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30m이내지역에 한해 제한하던 것을 100m이내 지역으로 확대(안 별표 제6호)
- 유효저수량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에는 설치를 제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별표 제7호)

□ 검토내용

- 금번 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범위중 파주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 그 이외 조례안 제4조 관련 별표1의 3호의 산림지역, 4호의 농지지역, 5호의 문화재 보호구역등 주변지역, 8호의 주민거주지역, 9호의 주변여건 판단 지역등을 추가하여 법령의 위임범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별표 8호의 주민거주지역과 9호의 주변여건 판단지역에 대하여는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는 조항이라고 동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는 한영호외 16인의 진정이 지난 7월 14일 있었음

- 조례안 제4조 2항에서는 허용지역이외 지역이라도 관광지를 조성하기로 수립중인 지역내의 숙박업등과 기타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허용할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내지 제11조에서 동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점은 종전과 같다고 보아짐.

- 전반적으로 동 개정 조례안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함과 아울러 최근 인근지역의 준농림지역뿐만아니라 상업지역조차도 숙박업소 설치 허용과 관련한 비등한 반대여론과 지역주민정서, 나아가 국민정서에 비취볼 때 파주시의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